



: 2020-02-20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428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백수진(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의사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의원'의 원장이며, E은 위 D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피해자 F(여, 9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2:20경 부산해운대경찰서 G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H에 있는 I성형외과를 방문하였는데 아이의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당



장 수술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병원은 야간에 수술이 가능하느냐"라는 전화를 직접 받았고, 이에 수술이 가능하다 하였더니 22:45경 E과 피해자가 119에 의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손가락 굴곡건 손상의 경우 통상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손가락을 굽히게 하는 등 일정한 동작을 취해 보도록 한 뒤 환자가 의사의 지시대로 손가락을 굽히지 못하거나, 손가락이 저절로 퍼지는 현상 등으로 굴곡건 파열을 진단하게 되며, 만약 굴곡건 손상이 발견되면 접합 수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료를 게을리 하여 육안으로만 피해자의 손가락 상태를 살펴본 뒤 "아이의 손가락 인대는 끊어지지 않았다, 봉합만 하면 6개월 뒤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백전노장이다. 내 말을 믿어라,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의학적 지식이 없는 E으로 하여금 그 말을 믿도록 하여 피해자의 원손 3지, 4지, 5지에 대한 단순 피부 봉합술만 시행한 채 4지, 5지에 대하여 건 봉합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원손 4지, 5지 굴곡건 파열을 제 때 치료하지 못하게 하였고, 뒤늦게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함을 느낀 E이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원손 4지, 5지 굴곡건이 파열되어 있어 굽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2017. 9. 7.경, 2017. 12. 7.경 위 K병원에서 총 2회에 걸쳐 좌수부 4, 5지에 대하여 건 봉합술을 받게 하는 등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하여 좌수부 4, 5수지 굴곡변형이 발생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손가락 발육을 저해하여 수지의 단축 및 영구적인 변형을 초래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수부의 영구적인 기능 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M의 각 법정진술

1. K병원에 대한 2019. 12. 19.자 사실조회회신서, 사진 5장

1. I성형외과 초진기록지, K병원 진단서, K병원 의사소견서, K병원 의사소견서, K병원 수술기록지, F 상처부위 사진, K병원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수술기록지 및 환부촬영 사진 요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좌수부 3지의 경우 굴곡건에 손상이 있어서 건 접합수술을 하였고, 좌수부 4지와 5지의 경우 굴곡건에 이상이 없어서 단순 피부 봉합술만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먼저 방문했던 I성형외과에서 좌수부 4지의 굴곡건 파열이 진단된 점, K병원의 진단결과 3지의 굴곡건에 이상이 없었고, 3지에 대하여 굴곡건 접합술이 시행된 흔적이나 증상도 없었으며(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병원의 수술기록지와 환부촬영사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외견상으로도 4지와 5지의 손상 흔적이 3지의 그것보다 더 크고, 4지와 5지의 경우 가동성 자체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병원과 K병원을 방문한 시간적 간격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 및 그러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20-02-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_____